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미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71
----------	-----

발의연월일 : 2026.03.12.

발 의 자 : 박미정 의원(1명)

찬 성 자 : 오지환·유지웅·이형준·
신정태·안종숙·하서영·
이은경·강여정·김성주
의원 (총9명)

1. 제안이유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리일으킬 수 있고, 우열적 관계를 나타내는 “자매”라는 용어를 성 중립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친선”으로 정비하고,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있어 상위법령에 맞춰 지방의회의 동의 범위 조정을 통해 서초구와의 우호협력 등 다양한 교류사업 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정비 (제명, 안 제1조 ~ 안 제11조)

※ 제명(안) :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 등에 관한 조례」

나. “자매도시”를 “친선도시”로 정비 (안 제2조, 안 제10조 ~ 안 제11조)

- 다. 구의회 동의 규정을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취소 시로
정비 (안 제7조)
- 라. 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 규정 (안 제9조)
- 마. 조 제목의 용어 정비 (안 제3조·제4조·제5조·제10조)
-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
정비 (전체 조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 의 :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 협의 완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 2) 규제심사 : 규제 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을 “국내외 자치단체 간의 친선결연”으로,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를 “확대와 내실화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외”를 ““친선결연”이란 국내외”로,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 제휴를 통해”를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 자매결연”을 “이란 친선결연”으로, “합의의사”를 “합의 의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매도시”란”을 ““친선도시”란”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를 “친선결연을 체결한 국내외”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국내외 도시 간의

친선결연”으로, “법령”을 “조례”로,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자매결연 등의 대상)”을“(친선결연 등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대상도시”를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의 대상 도시”로, “지역여건 등이 구와 비슷한 국내·외”를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로 한다.

제5조의 제목“(결연 제의 및 결정)”을“(친선결연 등의 제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를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제의하거나 받은 경우,”로, “각종”을 “관련”으로, “송부 받”을 “제출받”으로, “결정한다”를 “결정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역여건의 유사성”을 “지역 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우호증진”을 “우호 증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대성”을 “기대효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을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전 교류) ① 구청장은 친선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상 도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 도시 간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사전에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 홍보물 등을 교환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동의)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의 친선결연을 체결하거나 취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매결연”을 “친선 결연”으로,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를 “기본적인 사항에 합의하여 서명하고, 합의서를 2부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을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으로, “상호합의”를 “상호 합의”로, “교류 후 체결함”을 “교류를 거친 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친선결연이나 우호협력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의 장이 합의서 등에 서명하여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친선결연 등 체결 및 교류 방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친선도시 등과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아동·청소년의 역량 함양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교육·체험 교류사업
- 2.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관광·스포츠 교류사업
-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업 교류사업
- 4. 선진 복지 체계 구축 및 공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봉사·복지·

보건·의료·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5.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 파견 및 연수

6. 상호 구호와 신뢰 구축을 위한 재난·재해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 물품의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구청장은 관내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친선도시 등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시설 이용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자매도시 관리)”를“(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을 “합의서·서명문서”로, “영구보전 하여야”를 “영구 보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매결연”을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으로, “교류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를 “교류 부진 또는 단절되지”로, “분야에서의”를 “분야에서”로, “추진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상”을 “친선도시와의 교류과정에서”로,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을 “교류가 단절되어 결연”으로,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를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u>국내·외 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u> 또는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u>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u>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자매결연</u>”이라 함은 <u>국내·외 자치단체</u> 또는 도시(이하 “<u>국내·외 도시</u>”라 한다)간 <u>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u>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p> <p>2. “<u>우호협력</u>”이라 함은 <u>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친선결연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u>국내외 자치단체 간</u> ----- <u>의 친선결연</u> ----- ----- <u>확대와 내실화를</u> ----- ----- ----- ----- ----- ----- -----</p> <p>제2조(정의) ----- ----- -----</p> <p>1. “<u>친선결연</u>”이란 <u>국내외</u> ---- ----- ----- <u>“국내외 도시”라 한다</u>)간 --- ----- ----- ----- ----- ----- ----- ----- <u>공동 발전을 도모하기</u> ----- ----- -----</p> <p>2. -----<u>이란 친선결연</u>--- ----- ----- <u>합의 의</u></p>

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3. “자매도시”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구와 비슷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5조(결연 제의 및 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대상 도시의 각종 자료를 미리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사-----

--.

3. “친선도시”란 -----
----- 친선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국내외 도시 간의 친선결연 --- 조례-----
----- 조례에서 -----
-- 따른다.

제4조(친선결연 등의 대상)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의 대상 도시-----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제5조(친선결연 등의 제의) -----
-----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제의하거나 받은 경우, -----
----- 관련 ----- 제출받-----
--- 결정해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
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생략)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
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
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
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
류의 필요성
6. 그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 교류 협력) ① 구청장은

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대상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양 도시간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의회 동의) 구청장은 국내

·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서

1. -----
--- 지역 여건
2. (현행과 같음)
3. -----
--- 우호 증진 -----
4. ----- 기
대효과
5. -----
--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

6. 그 밖-----

제6조(사전 교류) ① 구청장은 친

선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상 도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 도시 간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사전에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 홍보물 등을 교환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동의)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의 친선결연을 체결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 동의

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체결방법) ①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 또는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은 우호협력 등 상호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상호방문 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교류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 부진이나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

를 받아야 한다.

제8조(체결방법) ① 친선결연이나 우호협력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의 장이 합의서 등에 서명하여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친선결연 -----
----- 기본적인 사항에 합의하여 서명하고, 합의서를 2부씩 -----.

③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
----- 상호 합의-----
----- 교류를 거친 후 체결하는 것--.

④ 친선결연 등 체결 및 교류방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친선도시 등과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한다.

② 구청장은 구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1. 아동·청소년의 역량 함양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교육·체험 교류사업

2.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관광·스포츠 교류사업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업 교류사업

4. 선진 복지 체계 구축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봉사·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5.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 파견 및 연수

6. 상호 구호와 신뢰 구축을 위한 재난·재해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 물품의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구청장은 관내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친선도시 등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시설 이용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자매도시 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체결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11조(결연의 취소)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① -----
-- 친선결연 -----

----- 합의서·서명문
서 ----- 영구
보존하여야 ---.

② ----- 친선결연 또는 우호
협력 -----
교류 부진 또는 단절되지 ----
----- 분야에서 -----
-----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결연의 취소) ----- 친
선도시와의 교류과정에서 ----

-- 교류가 단절되어 결연-----
-----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붙임]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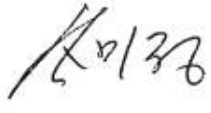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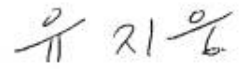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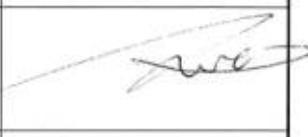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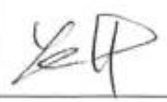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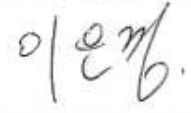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미정 의원 발의) 서명부

발 의 자		찬 성 자	
의 원 명	서명.날인	의 원 명	서명.날인
박 미 정		오 지 한	
		유 지 음	
		이 형 준	
		신정재	
		민종욱	
		하서영	
		이은영	
		강여경	
		김성주	